

충청북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0년 6월 29일
- 회부일자 : 2020년 7월 2일

3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(주차요금감면규정 구체화, 전기차 충전 시 최대 1시간 주차요금 면제)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과
- 긴급차량 주차료 면제 규정 신설 및 주차요금 정산방식 보완(카드결제 가능)에 따라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주차요금 감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목적·기간·대상 등을 구체화(안 제5조제1항 제3호, 제4호, 제11호)
-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주차료 면제 규정 신설 (안 제5조제1항 제10호)

- 친환경자동차 감면규정을 보완하여 전기차충전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 면제 규정을 추가 및 인용조문 변경(안 제5조 제3항 제2호)
- 주차요금 정산방식 변경(카드결제 가능)에 따라 단서조항 신설(안 제8조제1항)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(주차요금감면규정 구체화, 전기차 충전 시 주차요금 면제)과 주차요금 정산방식 변경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5조에서는
 - 주차요금 감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목적·기간·대상 등을 구체화하였고,
 - 긴급차량 주차료 면제 규정 신설과 친환경자동차 감면규정을 보완하였으며,
 - 안 제8조에서는 주차요금 정산방식 변경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도금고에 납입하는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것임.

-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‘주차요금감면규정 구체화’, ‘전기차 충전 시 주차요금 면제’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, 또한 주차요금 정산방식 변경에 따른 단서조항 신설도 적절하다고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
끝.